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7 (12 -16 July 2021)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8-2021

(Sub-committee meeting only has 1 Flash News)

Subject: Newsflash of III 7

제7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7차)가 원격으로 2021년 7월 12일에서 16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II 7차 주요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해양사고 조사보고서 (의제 4)

- 해양사고 조사보고서 제출률 제고를 위해 제출기한 설정 및 중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해당 의견은 해양사고 조사를 성급히 완료하게 하여 보고서 품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고 유형별로 조사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하여 의무제출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해양사고 조사코드(CI Code)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함
- 어선 선외추락, 도선사 사다리 사고원인 규명 및 추가 논의를 위한 통신 작업반을 개설하여 관련 사고 조사보고서를 분석/검토하기로 함

2.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의제 5)

- 제32차 총회에서 채택을 위하여 항만국통제 절차서(Res.A.1138(31))에 대한 개정안의 초안이 완료되었으며, 동 결의서는 선박의 검사, 결함사항의 식별, 선박의 장비 및 선원에 대한 검사시의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임
- PSC 점검 절차서에 원격 점검 방식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기존 PSC 검사 항목들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으로 인해 반영되지 않음
- 항만국통제 절차서(Res.A.1138(31)) 부록에 항만국통제 일시중지·재개를 위한 세부지침 반영 여부는 통신작업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7 (12 -16 July 2021)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8-2021

(Sub-committee meeting only has 1 Flash News)

3. HSSC에 따른 최신 검사지침 (의제 8)

- III 7차는 HSSC 검사지침 및 의무규정 목록에 관한 통신작업반의 결과보고서를 고려하였으며, 32차 총회의 채택을 위한 다음의 검사지침 개정안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완성하였음:
 - i. III Code의 협약상 의무 규정 목록(Res.A.1141(31)) 개정 및 최신화;
 - ii. HSSC에 따른 검사지침(Res.A.1140(31)) 개정 및 최신화; 및
 - iii. 선박 보유를 요하는 증서 및 문서 목록 (FAL.2/Circ.131-MEPC.1/Circ.873 -MSC.1/Circ.1586-LEG.2/Circ.3)의 개정
- MARPOL 및 NOx Technical Code 개정에 따라 전자기록부 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함
- BWM Commissioning Test 검사지침이 기존에는 D-2 규정의 준수 자체를 확인하는 항목이었으나, MEPC75에서 승인된 BWM.2/Circ.70/Rev.1에 따라 D-2 규정의 준수가 아니라 BWMS의 설치된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개정함
- 유효기간이 경과된 1차 전지를 2-way VHF 작동 시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석을 적용하여 검사지침을 개정함
- MEPC75 에서 승인되어 개정된 MARPOL 부속서6 / 14.10 규칙에 연료유 샘플링 지점을 설치하도록 한 것에 따라, 샘플링 지점을 확인하는 지침을 추가하였음.
- MSC103 및 MEPC76 이후 채택되는 협약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33차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HSSC에 따른 검사지침 및 III Code의 협약 상 의무 규정 목록의 개정안 작업을 위해 통신작업반을 재개설 하였음



Briefings of IMO Meeting

III 7 (12 -16 July 2021)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8-2021

(Sub-committee meeting only has 1 Flash News)

4. III Code 관련 규정의 의무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목록 (의제 9)

- IMO 회원국 감사제도(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결과로부터 III Code의 협약 상 의무규정 목록에 추가를 검토할 사항이 제출되었음
 - SOLAS 1974 Ch.II-1 reg.3-1 (선박의 구조) RO 요건의 부재 시, 적용 가능한 기국의 구조, 기계 및 전기적 요건을 따라야 함
 - 위 문장에 대해 ‘기국은 RO가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기준에 대한 대책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문장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하여 의무규정 목록에 추가하는 것으로 기국의 책임을 완화함;

‘RO의 요건에 따라 설계/건조/유지되지 않은 선박에 한하여, 기국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는 국내기준을 보유해야 한다.’

-끝-

P.I.C:

문서인 / 책임검사원

협약업무팀

Tel: 070 8799 8335

Fax: 070 8799 8339

E-mail: convention@krs.co.kr

검사업무팀장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